

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

제정 2026. 6. 18.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률”) 제6조에 의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)이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) 제6조의2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기준수수료”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.
2. “부가수수료”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에 있어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본사에서 인증 행위에 필요한 출장을 갈 때 발생하는 실비를 말한다.
3. “할증계수”란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기준수수료에서 선박의 톤급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수치를 말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기준) ①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수료는 [별표 1]에서 [별표 4]에 따르며, 수수료 반환 범위는 [별표 5]에 따른다.

② 규칙 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이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. 다만 재평가 결과 당초 심사·평가 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재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.

③ 예비인증을 득한 선박이 본인증을 신청할 경우 또는 본인증을 받은 선박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70을 부과한다.

④ 인증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1부 당 발급비용 10,000원을 부과한다.

제5조(징수방법) ① 해양환경실장은 인증 신청이 들어오면 운영지원실장에게 수수료 부과를 위한 관련 정보(신청인, 인증 신청대상 및 신청내용, 신청일자, 수수료 부과금액 등)를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지원실장은 해양환경실로부터 공문을 수신하면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로 수

수료를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.

③ 해양환경실장은 운영지원실장을 통해 수수료 수납을 확인하면 인증 신청 건을 접수하고 심사·평가를 진행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해양환경실장은 신청인의 요청으로 인해 인증 업무를 중단할 경우 [별표 5]에 따라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납실적 보고) 해양환경실 업무 담당자는 당월 수수료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해양교통본부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조(과오납금의 환급 등) ① 공단은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사실을 확인하여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근무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, [별지 제3호 서식]에 따른 환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업무절차)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수수료 부과·수납 절차는 아래와 같다.



제9조(수수료 변경 등) [별표 1]에서 [별표 5]에 따른 수수료 기준 및 요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 <2026. 7. 1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지침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전 신청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에 관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.

[별표 1]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(예비·본) 기준수수료

[별표 2] 선박 톤급 및 적용기술에 따른 수수료

[별표 3]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 기준수수료

[별표 4] 부가수수료(해당 시)

[별표 5] 인증 심사·평가 단계별 수수료 반환비율

[별지 제1호서식] 수수료 부과 및 수납 실적

[별지 제2호서식] 과오납금 환급신청서

[별지 제3호서식] 과오납금 환급통지서

[별표 1]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(예비·본) 기준수수료 : 2,000,000원

[별표 2] 선박 톤급 및 적용기술에 따른 수수료⁽²⁾

(부가세 별도)

총톤수		100톤 미만	100톤 이상, 500톤 미만	500톤 이상, 10,000톤 미만	10,000톤 이상, 50,000톤 미만	50,000톤 이상, 100,000톤 미만	100,000톤 이상
할증계수		-	0.8	0.9	1.0	1.1	1.2
적용기술 수 ⁽¹⁾	5	500,000원	1,600,000원	1,800,000원	2,000,000원	2,200,000원	2,400,000원
	4	500,000원	1,280,000원	1,440,000원	1,600,000원	1,760,000원	1,920,000원
	3	500,000원	960,000원	1,080,000원	1,200,000원	1,320,000원	1,440,000원
	2	500,000원	640,000원	720,000원	800,000원	880,000원	960,000원
	1	500,000원	500,000원	500,000원	500,000원	500,000원	500,000원

(1) 적용기술 수: 「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」 [별표 2]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세 부심사기준에 따라 (A)환경친화적 연료, (B)대기오염물질 저감(3종), (C)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중 적용된 기술의 수

(2) {(기준수수료)x(톤급별 할증계수)x(적용기술수/5)}이며, 100톤 미만 또는 적용기술 수가 1개인 선박의 경우 일괄 500,000원 부과

[별표 3]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 기준수수료 : 500,000원(부가세 별도)

[별표 4] 부가수수료(해당 시)

1. 인증자문위원회 : 인증자문위원회 개최 시 수반되는 실비로 자문위원 수당으로, 공단 「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요령」의 “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” 준용
2. 여비 : 선박과 관련한 현장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인증 심사·평가 시 발생하는 공단 직원 출장비(일비, 식비, 숙박비)로 내규 준용

[별표 5] 인증 심사·평가 단계별 수수료 반환비율

단계	수수료 반환비율
접수 후	90%
보완요청 후	50%
심사·평가 개시 후	0%

* 반환비율은 인증 신청 건에 대한 [별표 2]부터 [별표 4]까지의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, 부가세는 해당 금액에 별도로 산정

** [별표 4]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 개최 또는 공단 직원의 인증 심사·평가 관련 출장 업무 수행 이후 인증 신청 건을 철회할 경우, [별표 5]의 단계별 수수료 반환비율과 관계없이 발생금액을 일괄 신청인에게 부과

[별지 제1호 서식]

년 월 수수료 부과 및 수납실적

☐ 실 적

○ 20 년 월(부과 월)

(단위 : 원)

구분	수수료 부과현황			수수료 증감현황		
	부과액	수납액	미수납액	전년	금년	전년대비(%)
당월	당월분	부과액-미수납액				
누계						

☐ 미수금

○ 미수금 현황

(20 년 0월말(현재 월) 기준)

접수번호	신청인(대표자)	미수금 내역	미 수 금(원)
		00년 0월	

○ 20 년 0월(현재 월) 미수금 수납내역

접수번호	신청인(대표자)	부과일	채납금(원)	수납일
		00.00.00		00.00.00

☐ 과오납금

○ 과오납금 현황

(20 년 0월말(현재 월) 기준)

접수번호	신청인(대표자)	확인(신청)일	과오납금(원)	환급일
		00.00.00		00.00.00

[별지 제2호 서식]

과오납금 환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	처리기간 7일
신청자	성명(법인의 명칭)	생년월일(법인 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 내용	종류와 금액	환급금의 종류	환급 금액
	환급 사유		
	환급 사유 발생연월일	년 월 일	
그 밖의 참고사항 (환급받을 계좌 등)			
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료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→

접 수

→

검토 · 확인

→

기안 및 결재

→

통보

신청인

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

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

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

[별지 제3호 서식]

과오납금 환급통지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	처리기간 7일
환급 대상자	성명(법인의 명칭)	생년월일(법인 등록번호)	
	주 소	전화번호	
환 급 내 용			
환급 결정일	년 월 일		
환급 사유			
환급 금액	원		
환급금의 지급 방법			
환급금의 수령 시기			
환급금의 수령 장소			

위와 같이 환급내역을 알려드리니 위 환급금의 수령시기 이후에 환급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

직인